

## 출장결과보고

### I. 출장자

- 농업관측정보센터 박동규

### II. 출장 목적

- 일본의 쌀수입 현황과 공공비축제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관련 제도개선에 참조하도록 함

### III. 출장 기간 및 방문처(면담자)

- 출장 기간: 2008. 11.3~11.6(3박 4일)
- 출장지: 일본 센다이 일원
- 면담자:
  - 동북대학 교수 冬木勝仁・工簿昭彦
  - 동북농정국 식량부 三浦幸雄・ 頤田清
  - JA宮城 중앙회 영농농정부 太田博章, 高橋信一

### IV. 주요 조사 내용

- 관세화 전환 이후 연간 100~200톤 정도가 TRQ 이외에 수입되고 있으며, 주로 외국인용, 시험용 등으로 사용됨.
  - TRQ이외의 물량에 kg당 341엔의 종량세가 부과됨
-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공비축미를 매입·방출하고 있으며, 물량은 탄력적으로 조정
- 쌀 사이버거래소(가격형성센터)를 통해서 유통되는 물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가격형성센터에서 결정된 가격의 대표성에 의문에 제기되고 있음

**쌀 수입**

- 일본은 1993년 UR협상에서 쌀에 대한 관세화를 유예하는 특별조치를 인정받은 대신에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1995년부터 6년간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쌀을 수입하기로 하였음.
  - 수입되는 MMA 물량은 이행 첫 해에 기준연도(1986~1988년) 국내 소비량의 4%를 시작으로 그 후 잔여 이행 기간 동안 수입량을 매년 0.8%씩 증가시키기로 하였음.
- 국내산 쌀 공급과잉으로 재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MMA 물량이 매년 0.8%씩 증가하는 것이 재고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자 1999년 4월 1일부터 관세화로 전환하여, 관세를 지불하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하는 조기관세화를 단행하였음.
- 일본은 기준연도 쌀 소비의 7.2%에 해당하는 68만 2천톤(정곡기준)을 TRQ(Tariff Rate Quota)로 수입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에 수입되지 못한 물량은 그 다음해에 더 수입하고 있음.
  - 1995년 4월에서 2007년 10월까지 수입된 쌀은 총 830만톤으로 그중 750만 톤은 시장접근물량(OMA)이며, 나머지 80만톤은 국내 쌀 수입업자와 도매업자가 연명으로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 수입물량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는 방식인 SBS(Simultaneous-Buy-Sell)로 직접 수입되었음.

**< 1995.04~2008.03 수입쌀의 활용 내역 >**

수입량 (865만톤)	주식용 (91만톤)	주식용으로 공급된 MMA쌀보다 많은 양의 정부국산미를 원조용으로 활용(1996년 11월~2008년 3월 국산미 원조실적 115만톤) 또, 1996~1999년산 정부국산미의 일부를 국내 주식용으로 공급하지 않고 사료용 등으로서 판매(2004년 2월~2006년 6월 판매실적 72만톤)
	가공용 (319만톤)	국산미로는 대응하기 힘든 저가격의 가공용(된장, 소주, 떡 등)으로 연간20~30만톤의 고정수요가 있음.
	원조용 (222만톤)	식량원조규약에 의한 일본의 약속량은 밀가루 30만톤 상당(쌀 환산시 약 19만톤)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쌀로 이루어지고 있음.
	사료용 (104만톤)	2006년 7월 이후 수입년도가 오래된 MMA쌀부터 순차판매
	재고 (129만톤)	

주: 1) 수입량은 2008년 3월말시점의 정부매입실적임.  
 2) 재고 129만톤에는 사료용 비축 35만톤이 포함되어 있음.

- MMA 쌀은 정부가 철저히 관리함. MMA 쌀은 전량 국영무역을 통해 정부가 전량 구입하여 소비되고, 국내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주로 가공용으로 판매하고 있음.
  - MMA 쌀의 재고분은 국내산 쌀과 함께 해외 원조용으로 전환하고 최종적으로 팔리지 않고 남은 쌀에 대해서는 국내산 쌀의 재고와는 별도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음.
  
- TRQ 초과하여 연간 70~200톤 정도가 수입되고 있는데, TRQ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kg당 341엔의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음.
  - 2004년도 수입량 112톤은 총수요량 851만 7천 톤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임
  - 수입쌀 용도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하거나 도정기계업체의 시험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TRQ초과 수입량과 용도 >**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수량 (톤)	225	98	69	202	217	112
건수	128	159	155	185	216	204
건당 수량	1.76	0.62	0.45	1.09	1.00	0.55
용도	외식산업용 시험용 외국인용	건강식품용 외국인용	건강식품용 외식산업용 시험용	건강식품용 외식산업용 시험용	건강식품용	외식산업용 소매용

**공공비축제**

-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1995년부터 사전에 결정한 가격(일종의 행정가격임)이었으나 시장 수급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매입가격은 생산비, 물가상승률,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음.

$$\text{매입가격} = \text{전년산 미곡 정부매입가격} \times (\text{자주유통미가격 변동율} \times 0.5 + \text{생산비 변동률} \times 0.5)$$

- 매입가격 결정시 자주유통미 가격과 품질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공공비축미의 취지는 살렸지만, 생산비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자주유통미 가격보다 높게 설정됨. 따라서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됨.
- 시장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2004년부터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고 있음.
  - ① **입찰참가 자격자**
    - 해당년도산 국산미곡의 취급수량이 100톤 이상으로 예상되는 자.
    - 미곡 유통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해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아닐 것.
  - ② **입찰 실시시기**
    - 생산년의 가을부터 다음해 6월까지의 사이를 기본으로 하여 임의적으로 조정
  - ③ **매입메뉴**
    - 산지 · 품종 · 등급 별로 제시.
  - ④ **응찰방법**
    - 입찰참가자는 단위와 수량으로 신청
    - 최저 신청수량은 100톤 이상
    - 예정가격을 넘는 단가로 입찰한 자 중에서 가격이 낮은 순서로 매입예정수량에 도달하기까지를 낙찰자로 하는 복수낙찰제.
    - 입찰예정가격은 미곡가격형성센터의 취급공표가격 등을 기본으로 정부매입에 필요하지 않은 경비(운송임 등)를 공제하여 설정.
- 공공비축미는 공공비축제 취지에 맞게 최소한 1년 동안 보관 후 방출함. 통산 신곡이 방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3년 정도 비축후 방출됨.

- 매월 방출물량은 균등하지 않으며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되고 있음.
  - 공공비축미 방출은 경쟁입찰에 의한 방출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자격 등은 정부가 정함.
- 일본 농림수산성 2008/09년의 비축운영방침
- 2008/2009년의 비축운영에 대해서는 정부비축미의 상당부분을 새로이 2005년산, 2006년산, 2007년산 쌀이 차지하고, 정부비축미의 비축수량 및 민간의 유통재고수량이 안정공급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적절히 행함.
  - 구체적으로는 ‘2008/’2009년의 정부비축미의 매매는 회전비축의 원활하고 적절한 운영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실제의 판매수량이 계획을 밑돌 것으로 예견될 경우, 계획과 판매수량과의 차이분에 대해서 그 상당 수량을 정부매입수량에서 감축함(비축운영규칙).
  - 이러한 비축운영규칙을 전제로 정부비축미의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50만톤을 잠정 설정하고, 매입수량은 판매수량의 범위내에서 50만톤을 잠정 설정함. 또 앞으로 수급 사정 등이 변동하는 경우 어느정도 수정을 시행함.

#### 기타사항

- 공공비축미 매입예정가격은 미곡가격형성센터의 공표가격을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최근 미곡가격형성센터에 상장되는 물량이 급감함에 따라 기준가격으로써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가격형성센터(쌀 사이버거래소)에 상장된 물량이 2002년 102만톤에서 2006년에는 33만톤으로, 낙찰물량도 동일 기간 동안 90만톤에서 8만톤으로 줄어들었음
- 농협과 소비자나 소비자 유통업체와 직접 거래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가격형성센터에 지불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

< 가격형성센터 상장, 낙찰물량(만톤)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판매위탁수량	423	318	382	383	349
상장물량	102	74	45	67	33
낙찰물량	90	73	38	45	8